

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9. 17.(금) 10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57-242)

○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시행(‘10. 9. 23)에 따라 전기통신 등 용어를 방송통신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현행화와 근거 규정 정비 등을 위해 마련된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① 대통령령제명을 “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”에서 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”으로 개정
- ②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 법적 용어로 변경하고,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(예 : 발동발전기 ⇒ 발전기) 및 근거 규정 정비 등

현행	개정안	개정조문	변경횟수
전기통신	방송통신	안 제3조, 제31조	4
전기통신설비	방송통신설비	안 제1조외 19개 조문	57
전기통신기자재	방송통신기자재	안 제1조, 제2조	3
전기통신역무	방송통신서비스	안 제3조, 제10조, 제14조, 제23조	8
전기통신신호	방송통신콘텐츠	안 제3조, 제6조, 제13조	4
전기통신망	방송통신망	안 제3조, 제5조, 제14조	10
전기통신사업자	방송통신사업자	안 제3조, 제24조	2

- ③ 전기안전 기준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표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전기안전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(안 제11조)

2)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의 와이브로 사업 - (2010-57-243)

○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 기간통신사업(와이브로) 허가를 신청한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「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(안)」을 ‘허가심사 방법’은 제2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① 허가심사 방법 : 제2안으로 의결
 - 허가심사를 조기에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주파수 할당심사에 반영
 - KMI 허가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 종료 전에 실시

② 허가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

- 허가신청 적격 심사(예비심사)

·(심사내용)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(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, 외국인 지분제한(49% 초과소유) 여부 심사

·(심사위원 구성) 법률·회계 전문가 등 3~4명으로 구성

- 사업계획서 심사(본심사)

·(심사위원 구성) 법률·경제·회계·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심사위원 구성

·재정적 능력,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참여 확대(종전 1~2명 → 4~5명)

·(심사기준 및 평가) 영업계획의 타당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※ 심사항목별 100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,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결정

3)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0-57-244)

o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9조(허가·승인·등록 등)제5항에 의거,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마련된 「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(안)」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.

o 주요 내용

①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: 원안대로 의결

②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

① 사업자 선정방식 : 제1안으로 의결

-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 (절대평가)

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군 구분 여부 : 제2안으로 의결

- 별도의 사업자 군 구분 없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

③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 : 제1안으로 의결

-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동시에 선정

③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

① 심사사항(5개)·심사항목(19개) 구성 : 원안대로 의결

- (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) ①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 계획,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,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, ④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
- (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)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 계획,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,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
- (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) ① 사업추진계획, ②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, ③ 납입자본금 규모,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, ⑤ 사업성 분석, ⑥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
- (재정 및 기술적 능력) ① 재정적 능력, ② 자금출자 능력, ③ 기술적 능력
- (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)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, ② 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 계획, ③ 출연금

② 심사사항별 배점 : 종합편성 채널은 제3-1안, 보도전문 채널은 제1안으로 의결

(단위 : %)

심사사항	종합편성 배점	보도전문 배점
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	25	30
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5	20
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0	25
재정 및 기술적 능력	20	15
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	10	10
합 계	100	100

④ 승인 최저점수 설정

① 전체 및 심사사항별 총점 : 원안대로 의결

- 전체 총점의 80% 이상, 심사사항별 총점의 70%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,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

② 심사항목별 총점 : 제3안으로 의결

-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60% 이상으로 설정

·특정 심사항목'은 「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⑤ 납입자본금

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: 제3안으로 의결

-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,000억원을 설정

- ▶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3,0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, 5,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%를 부여하고,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
- ▶ 3,000억원 초과 5,0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,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%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

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: 제3안으로 의결

-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400억원을 설정

- ▶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4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, 6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%를 부여하고,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
- ▶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,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%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

⑥ 출연금

① 최소 출연금 규모 : 제2안으로 의결

-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억원,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5억원으로 설정

② 심사방안 : 제1안으로 의결

-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%를 부여,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

⑦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

① 기본 원칙 : 원안대로 의결

-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

※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: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

② **(기존 사업자 승인 신청)**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종편·보도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: 수정의결

▶ **(신청 단계)** 승인 신청시,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에 대한 '처분계획'을 제출

▶ **(심사 단계)** 신청법인이 제출한 '처분계획'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,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

※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

▶ **(승인 단계)**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, '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'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

※ 수정내용 : "심사 단계" 내용에 "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" 추가

③ **(신규 사업자의 승인 신청)** 동일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: 제2안을 수정의결

- 복수의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은 허용하되,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중복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

▶ **(신청 단계)**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, **사전에 지정한**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'승인신청 철회계획'을 제출

▶ **(심사 단계)** 신청법인이 제출한 '철회계획'을 심사하고,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

※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

▶ **(승인 단계)** 해당 신청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,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

※ 수정내용 : ① "신청 단계" 내용 중 "한 개 사업에 대한"을 "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"으로 수정

② "심사 단계" 내용에 "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" 추가

⑧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

① 기본 원칙 : 원안대로 의결

- 어느 한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

② 세부 방안 : 제1안을 수정의결

- 어느 한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

·5%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※ 수정내용 : ① “금지하되, 이를 위반하는 신청법인에 대해 부적격 처리”를 “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”로 수정

② “5%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” 추가

사. 보고사항

1)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선불통화서비스 발행 시 피보험자,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,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,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피보험자 지정

- 선불통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’로 지정

※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, 보상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

②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마련

- 건실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선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산규모 및 선불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가입토록 규정

< 선불통화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>

보험가입금 산정조건		당해연도 보험가입금액
전년도 순자산 규모	선불통화서비스발행예정액 전년도전기통신역무매출액	
30억원 이상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% 이상
	10%~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30억원 미만	10% 미만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% 이상
	10%~30%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80% 이상
	30% 초과	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100%

③ 보상금 지급 절차

-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보상 공고, 이용자의 보상 신청, 보상금 산정 및 산정결과 통보, 지급 절차를 규정

2) 「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(고시)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으로 한국전력, 한국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설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(고시) 전부개정안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
o 주요 내용

- ①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시 필요한 제공 범위와 절차 및 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
 - 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전주, 관로 및 광케이블 등임
 - 설비제공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(KTOA)를 지정하여 설비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하도록 함
 - 이를 통하여 통신사업자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여유 통신설비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
- ② 기타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설비제공 관련 조항 등을 재 배치(전부 개정)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9. 24(금),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8:55)

※ 12:35 정회, 15:00 속개, 17:00 정회, 17:10 속개